

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서

수탁 기관	기관명	담당부서 (담당자) ()	전화번호 (팩스번호) ()
	주소		
연장신청기간	일 (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)		
수탁내용 및 연장신청사유	※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수탁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 하려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(수탁기관의 장)

(인)

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